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2025. 12. 12. (금)  
보건복지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1. 4. 소형준 의원 외 15인 (의안번호 548호)
- 나. 회부일자: 2025. 11. 14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 
-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【2025. 11. 24. 상정·원안가결】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소형준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필수사항 등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고 신설함(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)

#### 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-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입법예고
  - 기 간 : 2025. 11. 6. ~ 2025. 11. 10.
  - 의 견 : 의견 없음.

### 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** (전문위원: 강영숙)

#### 가. 개요

- 본 개정안은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 법에 맞게 정비하고,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

##### ○ 안 제2조(설치 및 기능) 정비

제1호: 「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제1항에서 구청장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」으로 규정을 정비하여, 현행 조례에 동일 내용으로 별도 기재되어 중복 되었던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세부 기능을 삭제함.

제2호: 「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」으로 기능을 확대함.

이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아동빈곤 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되, 그 기능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해당 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단서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, 아동복지 심의위원회가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 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설치 및 기능)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	제2조(설치 및 기능) ----- ----- -----.
1.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	1. 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제1항에서 구청장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
2.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	2.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
3.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	<삭 제>
4.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	<삭 제>
5.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	<삭 제>
6.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	<삭 제>
7.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<삭 제>

## 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,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-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 보호·지원 전반을,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기능상 연계성과 보완성이 있으며, 정책 추진 체계가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.
- 따라서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면 아동 지원정책을 보다 일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상위법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「아동복지법」 제12조(아동복지심의위원회) 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)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각각 둔다.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,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.

<개정 2020. 12. 29., 2021. 12. 21., 2024. 2. 6.>

1.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3.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
4.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
- 4의2.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
5.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
6.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
7.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)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)을 말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
1.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, 학부모 단체, 아동·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**

**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**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 보고서

2025. 12. 12. (금)  
보건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1. 12. 성북구청장 제출 (의안번호 532호)
- 나. 회부일자: 2025. 11. 14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-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【2025. 11. 24. 상정·원안가결】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곽정숙 복지교육국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·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·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, 제4조)
-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,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, 제6조)
-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, 통합지원 제공 절차 및 전담조직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11조)
-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 ~ 제17조)
- 사무의 위탁, 교육 및 홍보,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(안 제18조 ~ 제20조)

## 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사항 없음

○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5. 9. 25. ~ 2025. 10. 15. (20일간)

- 의 견 : 의견제출 없음

○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○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- 부패영향평가 : 개선권고사항 반영

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일부 반영

- 아동영향평가 : 원안동의

구분	권고내용	반영 여부	개선안
부패 영향 평가	안 제13조제5항(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) - 위원 연임 횟수 구체적 규정	반영	제13조(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)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	<신설> -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	반영	제14조(위원의 해촉 등) 위원의 해촉 및 제척·기피·회피 등 그 밖의 협의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	안 제15조(협의체 회의) - 회의록 작성 및 보관 규정 신설	반영	제16조(협의체 회의)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
	안 제16조(수당) - 수당 조문 정비(지급 제외 대상 관련)	반영	제17조(수당)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성별 영향 평가	안 제2조(정의) - 제2호의 '통합지원 대상자'에 정신질환자 포함 제안	미반영	[미반영 사유] 상위법령(돌봄통합지원법)상 대상자 정의에 명시되어있지 않고, 돌봄통합지원법

구분	권고내용	반영 여부	개선안
			시행령 제2조제2항에 명시된 대상자(65세 이상,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) 외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시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함
	<b>안 제2조(정의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2호의 다목 범위에서 정신질환자 명시 및 그 가족까지 대상 확대 제안</li> </ul>	미반영	<p><b>[미반영 사유]</b></p> <p>조례 제2조의 ‘통합지원 대상자’는 통합 돌봄 사업 대상 범위에 대한 정의이고, 제6조제1항 2호와 5호의 내용은 대상자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요 시 정신질환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는 내용으로, 통합지원 대상자 정의에 정신질환 및 그 가족을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함</p>
	<b>안 제5조(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역계획을 수립할 시 성별, 연령, 장애여부 및 유형 등 시민의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할 것을 제안</li> </ul>	미반영	<p><b>[미반영 사유]</b></p> <p>조례 제5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의 내용은 돌봄통합지원 조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제시한 개선의견은 제6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</p>
	<b>안 제6조(통합지원 사업 추진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통합지원 사업 추진 시 성별, 연령, 장애여부 및 유형 등 시민의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할 것을 제안</li> </ul>	반영	<p><b>제6조(통합지원 사업 추진)</b>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이 때, 성별, 연령, 장애여부 및 유형 등 시민의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강영숙)

#### 가. 개요

- 본 조례안은 2026. 3. 27. 시행 예정인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」에 맞추어,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이 '실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' 의료 ·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·연계 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

- 참고로, 보건복지부에서는 '23.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, 현재는 우리 구를 포함한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며 본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음.

### 성북구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

- 추진기간 : 2025. 7월~2026. 3월  
- 대상자 발굴 및 신청 : '25. 9월부터~
- 대상자 :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·요양·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**75세 이상 노인, 고령장애인**
- 사업내용 :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의 성북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
- 대상사업 : **5개 분야, 38개 서비스**
- 분야별 사업추진부서

#### 성북형 통합돌봄 조성

(총괄:복지정책과)

보건의료	건강관리·예방	장기요양	일상생활 돌봄	주거
· 건강보험공단	· 건강관리과	· 건강보험공단	· 복지정책과	· 건강보험공단
· 건강정책과	· 의약과	· 어르신장애인복지과	· 어르신장애인복지과	· 생활보장과
· 생활보장과	· 어르신장애인복지과		· 의약과	· 복지정책과
· 보건지소				· 어르신장애인복지과

## 나. 주요내용

### ○ 안 제1조(목적), 안 제2조(정의)

-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'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' 의료·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목적을 규정하고, 통합지원, 통합지원 대상자,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 주요 용어를 명확히 함.

### ○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

-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

수립·시행하고,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함

○ 안 제5조(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), 안 제6조(통합지원 사업 추진)

- 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< 안 제6조, 통합지원 사업 추진 대상 사업 >

1.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·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
2. 노인성 질병, 만성질환, 장애,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
3.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
4. 퇴원자·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·건강관리 지원사업
5.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·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
6.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
7.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서비스, 보조기기 지원 등
8.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
9.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○ 안 제7조(개인별 지원계획 수립), 안 제8조(통합지원 제공 등)

-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·안내하고,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의 각종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9조(통합지원회의), 안 제10조(통합지원 창구 설치), 안 제11조(전담조직 설치)

-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·요양·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·변경 등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며, 주민들이 편리하게 통합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

통합지원 창구를 설치·운영하고, 통합지원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성북구 본청 내에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12조(통합지원협의체), 안 제13조(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), 안 제17조(수당)

-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과 기관 간 연계를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두고, 해당 협의체는 지역계획의 수립·평가, 시책 추진, 기관 간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도록 함. 협의체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구청장이 맡고,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고, 회의 참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.

○ 안 제18조(사무의 위탁), 안 제19조(교육 및 홍보), 안 제20조(개인정보 등의 보호)

-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·홍보를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 아울러 통합돌봄 업무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하도록 함.

## 다. 종합의견

○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」에 따라, 노인·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'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' 의료·요양·건강관리·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또한 기존 분절적 서비스 제공을 통합·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크며, 법 시행에 맞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리·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**

**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# 2026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심사 보고서

2025. 12. 12. (금)  
보건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1. 12. 성북구청장 제출 (의안번호 533호)
- 나. 회부일자: 2025. 11. 14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-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【2025. 11. 24. 상정·원안가결】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곽정숙 복지교육국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,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,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성북복지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보통재산을 출연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출연기관 :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
- 일반현황
- 출범일자 : 2025. 7. 1.
  - 설립근거 : 「민법」 제32조 (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)  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  - 위 치 : 성북구 장위로 8길 20
  - 조직구성 : 이사회(15명), 감사(2명), 사무국(1국 3팀, 현원 15명)
- 주요사업 (출연금 사업)

- 틈새없는 복지안전망 구현 : 주민복지 아카데미, 행복한 세탁소 운영, 1인가구 맞춤 멤버십 서비스 구축
- 지역상생 기부나눔문화 활성화 : 성북복지재단 홍보 서포터즈
- 지역복지 인프라 개선 : 사회복지종사자 직무 역량강화
- 출연금액 및 내용
  - 출연금액 : 1,574,740천원
  - 출연내용 : 재단 보통재산 지원

## 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 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 ·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강영숙)

### 가.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<sup>1)</sup>에 따라 2026년도 성북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임.
- 성북복지재단은 성북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,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기관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--

1)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 
     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 
     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 ○ 출연 근거

- 성북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<sup>2)</sup>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도록 한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.
- 또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<sup>3)</sup>에서,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출연에 필요한 법적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.

## ○ 출연 규모

- 2026년도 출연금은 총 15억 74백만원으로, 성북복지재단의 보통재산에 인건비·운영비·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, 전년도에 1회성으로 편성되었던 기본재산(감 20 억)이 제외됨에 따라 전년 대비 42.51%인 11억 64백만원이 감 편성되었음.

### 〈2026년도 출연 예산안〉

(단위: 천 원)

구 분		’ 26년 예산(안)	’ 25년 예산	증감액	증감률(%)	비고
일반 회계	합계	1,574,740	2,739,377	△1,164,637	△42.51	
	소계	1,574,740	739,377	835,363	112.98	
	보통 재산	인건비	787,048	571,780	215,268	37.65
		운영비	629,168	148,097	481,071	324.84
		사업비	158,524	19,500	139,024	712.94
		기본재산	0	2,000,000	2,000,000	△100 설립시1회 출연 (법인설립허가요건)

- 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.
- 3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출연금 등의 교부)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- 세부내역으로는 성북복지재단운영을 위한 필수인력 14명의 인건비 7억 87백만원, 운영비 6억 29백만원, 사업비 1억 58백만원으로,
- 특히, 사업비는 주민복지 아카데미 6백만원, 1인가구맞춤 멤버십서비스구축 60백만원, 성북복지재단 서포터즈 성북U리더스 3백만원,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23백만원, 행복한 세탁소 66백만원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편성함.

#### **다. 종합의견**

- 본 출연 동의안은 성북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출연의 목적과 절차 등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동의안으로 판단됨.
- 또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는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#### 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**

#### **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**

#### 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### **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#### 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